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

홍보 인쇄물 제작 과업내용서

2025. 2.

안 산 문 화 재 단
Ansan Cultural Foundation

Ⅰ 과업목적

본 과업은 재단법인 안산문화재단(이하 “발주기관” 이라 한다) 과 계약자(이하 “계약상대자” 라 한다) 간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추진을 위한 발주기관과 계약자인 계약상대자 간 홍보 인쇄물 제작 등 제반 사항을 이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Ⅱ 추진방향

□ 공연정보, 축제장 구성 현황 등 효과적인 정보 전달

□ 편리하게 축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관객 편의성 확대

□ ESG경영 방침에 맞는 친환경 용지 및 콩기름 인쇄

Ⅲ 과업개요

□ 과 업 명: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홍보 인쇄물 제작

□ 과업기간: 계약체결일~2025. 5. 2.(금)

□ 과업범위: 축제 사전리플렛, 프로그램북, 초청장 인쇄

□ 추정금액: 금16,000,000원(금일천육백만원/부가세 포함)

□ 계약방법: 소액수의(2인이상 견적제출)

□ 참가자격

○ 안산시 사업자로 등록된 업자

○ 기타인쇄물 직접생산확인증명서(세부품명: 5510159901)

○ 출판사(업종코드: 1517) 또는 인쇄사(업종코드: 1518)를 등록한 업체

Ⅳ 과업목적물

□ 홍보 인쇄물 제작 목록

○ 제 작 명: 사전리플렛

- 제작부수: 각 5,000부
- 제작면수: 12면
- 제작규격: 250mm*130mm(1면)
- 제작재질: 200g 크러쉬(친환경종이)
- 인쇄색도: 양면 칼라(콩기름 잉크 인쇄)
- 제본종류: 중철제본

○ 제 작 명: 초청장 및 규격봉투

- 제작부수: 각 500부
- 제작면수: 초청장 2면, 규격봉투 2면
- 제작규격: 100mm*200mm(1면)
- 제작재질: 초청장-250g(친환경종이), 규격봉투-120g
- 인쇄색도: 초청장-양면 칼라(콩기름 잉크 인쇄), 규격봉투-4도
- 기타사항: 봉투에 양면테이프 작업까지 완료 후 납품

○ 제 작 명: 프로그램북

- 제작부수: 17,000부
- 제작면수: 80면
- 제작규격: 150mm*210mm(1면)
- 제작재질: 180g 크러쉬 표지, 80g 미색 내지(친환경종이)
- 인쇄색도: 표지 4도, 내지 4도, 양면 칼라(콩기름 잉크 인쇄)
- 제본종류: 무선제본

※ 상기 제작규격과 수량은 총 계약금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변동될 수 있음

□ 규격, 재질 및 사양

○기본 사양, 규격, 디자인은 “발주기관”에서 정한 바에 의함

○인쇄물 시안은 “발주기관”에서 제공한 시안으로 제작하여야 하며, “발주기관”이 일부 변경 또는 시안을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과정에 이를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

○인쇄물은 친환경 종이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문자 및 색상은 섬세하게 제작

○인쇄시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, 쉽게 지워지거나 번지지 않도록 섬세하게 제작

○인쇄물의 색상 및 텍스트가 디자인 그대로 반영되고 가독성이 높게 인쇄되도록 철저한 검수 후 납품

Ⅴ 추진일정

구 분	3월				4월				5월	
사전리플렛 인쇄										
사전리플렛 납품		3.14.								
초청장 인쇄										
초청장 납품				3.28.						
프로그램북 인쇄										
프로그램북 납품								4.30.		
검수										

※ 상기 일정은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 간 상호 합의 하에 변경 가능

Ⅵ 수행지침

□ 일반사항

○ 본 과업은 관계 규정 및 과업내용서를 준수하되 “발주기관” 과 상호 발전적·전략적 협의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.

○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,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○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.

○ 다음과 같은 경우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과 협의하고 지시에 따른다.

-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
- “계약상대자” 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

○ 과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나 본 과업내용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로 시행한다.

○ 본 과업내용서에 대한 해석은 “발주기관” 의 해석을 우선시한다.

□ “발주기관” 의 의무

○ “발주기관” 은 과업과 관련한 “계약상대자” 의 업무를 지도 및 감독한다.

○ “발주기관” 은 “계약상대자” 가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.

□ “계약상대자” 의 의무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의 지도·감독에 협조하며 과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임한다.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의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과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및 위임하거나, 담보 제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과업 수행 중 “발주기관”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부담해야 한다.

□ 보안관리

○ 과업 수행 중에 발생한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“발주기관” 이 소유하며, “계약상대자” 는 “발주기관” 의 허락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.

○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 재산권을 사용하는 경우 “계약상대자” 가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.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“계약상대자” 가 피해자 측과 합의 및 배상하여야 한다. 또한, “발주기관” 에 부과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.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으로 취득한 “발주기관” 의 정보자료 및 업무상 비밀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.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본 과업을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를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도, “발주기관” 의 서면 동의가 없는 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을 위해 이용하지 아니한다.

□ 납품 시 유의사항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과업기간 종료 시까지 “발주기관” 이 지정하는 장소로 물품을 납품해야 한다.

○ “발주기관” 이 물품을 검사 · 수령하기까지 “발주기관” 의

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물품의 망실 · 파손 등은 “계약상대자” 의 부담으로 한다.

○ 모든 물품의 규격, 재질, 방식은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“발주기관” 이 제시한 규격에 맞아야 한다.

○ “계약상대자” 는 물품의 안전한 운송을 위하여 포장 시 내용물 보전에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.

○ 인쇄물의 하자는 “계약상대자” 가 1년간 담보한다.

□ 계약의 해지

○ “발주기관” 의 사정변경 혹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한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과업이 취소되었을 경우, “발주기관”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“계약상대자” 에게 지급해야 한다. 다만 상급기관의 지침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. “계약상대자” 는 당 조항에서 정하는바 이외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.

- “계약상대자” 가 이미 용역을 완료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한 후 “발주기관” 의 검사를 필하였을 경우, 검사를 받은 기성부분
- “발주기관” 의 검사를 필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과 지출 증빙이 가능한 투입비용

○ “발주기관” 과 “계약상대자” 는 상대방이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, 유선 및 서면으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. 요구사항이 7일 이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, 계약 해지 통보 후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귀책사유자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○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“발주기관”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“계약상대자”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“계약상대자”는 “발주기관”에 어떠한 비용도 청구할 수 없으며, “발주기관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.

- “계약상대자”가 계약 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
- “계약상대자”가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
- 지연배상금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로서 “계약상대자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- “계약상대자”의 부도, 파산, 해산, 영업정지, 사업 또는 영업에 관한 등록 · 인가 · 허가 등의 취소, 납세 의무 위반, 4대보험 체납, 최저임금법 위반, 그 밖의 사유로 계약 이행이 곤란한 경우
- “계약상대자”가 과업을 포기하는 경우

□ 분쟁 해결

○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는 상기 명시된 합의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,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한다.

○ 본 과업내용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· 시행령 · 시행규칙 · 예규와 “발주기관”의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가 합의하여 진행한다.

○ “발주기관”과 “계약상대자”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, 관할법원은 “발주기관”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.

○ 과업 수행 중 분쟁이 발생할 시 과업의 수행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.